

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 요구의 건

의안 번호	594
----------	-----

요구연월일: 2025. 8. 22.

요 구 자: 박현우·이성수·이순우·
임헌호·이규선·차인영 의원
(6인)

1. 제안이유

- 가. 본 위원회는 2025년 8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5차례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현재까지 개최되지 않아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갈음하는 조사결과보고서 채택과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을 심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- 나.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사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에 해당하므로, 조속히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조사활동을 정리하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심의함으로써 의회의 권위를 지킬 필요가 있음.
- 다. 이에 「지방자치법」 제70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체 없이 개최될 것을 요구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70조에 따라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 요구
- 나. 개회 요구 일시는 2025년 8월 27일 17시로 함.

3. 관계법령

- 가. 지방자치법 제70조(위원회 개회)